

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최봉희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8. 26.

행 정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경 과

의안 제380호로 2024년 8월 12일 최봉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률 근거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조례 목적 조항의 상위법률 근거조항 정비 (안 제1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8. 12. ~ 8. 16.)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  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1조(목적)에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용 조항을 정비함
  
- 검토 결과
  - 본 안건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이 '21.12.28. 개정됨에 따라 제11조제6항이 제11조제8항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
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⑧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